

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[별표 3의3] <개정 2025. 2. 7.>

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 내용의 표시방법(제6조의3제11항 관련)

1.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 내용의 표시

← 60mm →

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 내용의 표시		
형식승인번호		
기상측기 명칭		
제작사		
제조번호		
모델명		
형식승인일	년 월 일	
변경승인번호		
변경승인일	년 월 일	

← 30mm →
← 30mm →

▲
40mm
▼

비고: 소형 기상측기인 경우 표시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.

2.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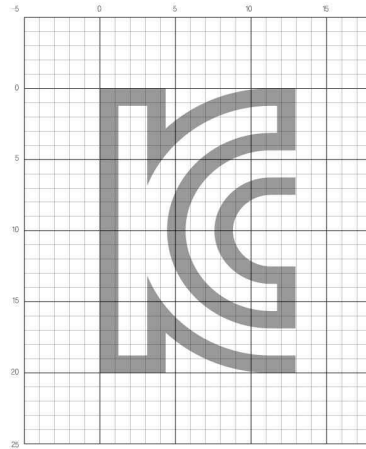
가. 국가통합인증마크의 기본도안 모형



나. 도안 요령 및 색채

1) 도안 요령

1-1) 국가통합인증마크의 가로 및 세로 비율은 아래의 격자눈금에 따른다.



1-2)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, 인증마크의 세로 높이는 5mm 미만으로 할 수 없다.

2) 색채

2-1) 국가통합인증마크 기본모형의 색채는 아래와 같은 남색(KS A 0062에 따른 5PB 2/8 색채)을 사용한다.

	남색 5PB 2/8
--	---------------

2-2) 특수한 효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금색(KS A 0062에 따른 10YR 6/4 색채)과 은색(KS A 0062에 따른 N 7 색채)을 사용할 수 있으며, 남색, 금색 또는 은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검정색(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)을 사용할 수 있다.

	금색 10YR 6/4
--	----------------

	은색 N 7
--	-----------

	검정색 N 2
--	------------

※ 비교: 금색과 은색에는 반짝이는 효과를 넣어 사용할 수 있다.

3. 표시 방법

가.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는 기상측기에 각각 해야 한다.

나.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는 빗물 등에 젖지 않는 재질로 인쇄하여 부착하거나 기상측기의 표면에 각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.